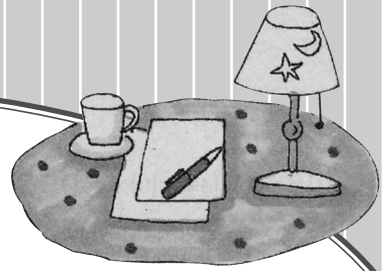


새해 달라지는 제도 무엇이 있나?



# 쌀 품종 · 식육 표시 '엄격' 친환경농산물 인증 간소화

올해부터 쌀 품종 혼입률을 다르게 표시하면 처벌하고,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가 실시된다. 또 사고농가 영농도우미와 고령 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. 특히 현행 4종류인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3종류로 간소화 된다. 새해 달라지는 주요 농정제도와 시책을 알아본다.

■ 홍보부

## 농정일반

### 친환경인증제 4→3단계 축소 등 개선

◇농지 내 축사시설 허용= 올해부터 농지에 축사를 설치·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. 농지법 개정안이 올해 공포되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. ☎02-500-1670

◇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대상 확대= 직불금 대상지역을 오지면의 경우 경지 경사도를 일반면과 달리 14%에서 7%로 낮추고, 도서지역은 모든 도서로 확대했다. ☎02-500-1672

◇농업·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= 올해부터 농촌지역의 다양한 잠재자원을 활용해 휴양·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는 농업·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. 2014년까지 각 시·도별로 2~3곳씩 총 24개 지구를 개발한다. ☎02-500-1968

◇농어민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변경= 사업주 무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변경되고, 지

원기준 등급도 13등급에서 14등급으로 확대된다. ☎02-500-2086

◇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= 3월 28일부터 현재 4종류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3종류(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, 저농약농산물)로 간소화되고, '무항생제 축산물' 인증이 신설된다. 또 인증 유효기간이 유기농산물을 제외하고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. ☎02-500-1812

◇농림기술개발사업 개선= 기존 3종류인 세부사업 구분이 '기획과제' '일반과제' 2종류로 간소화되고, 지원금액 한도도 기획과제는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, 일반과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됐다. ☎02-500-1797

◇쌀 브랜드 육성사업 실시= 올해부터 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신규로 실시해 2010년까지 시·군 단위 대표브랜드 100개를 육성한다. ☎02-500-2113

◇쌀·현미의 품종명 표시방법 변경= 1일부터

표시된 품종명과 다른 품종의 혼입률이 20%를 초과할 경우 처벌한다. 거짓 표시 및 과대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,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☎02-500-2117.

## 과수 · 원예

### 재해대비 시설하우스 보강지원 실시

◇과실브랜드 육성 및 지원=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의 대표 브랜드를 전국 및 광역 단위로 발굴·육성한다. 올해는 전국 1곳, 광역 7곳을 육성할 계획이다. ☎02-500-1882.

◇과원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요건 강화=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뒤 과원 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판 과원도 1년 이상 경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. 또 지원 제외자에 ▲허위·담합으로 지원받은 자 ▲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를 포함시켰다. ☎02-500-1882.

◇배추·무 포장유통 전국 공영도매시장 전면 실시=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배추·무를 출하하려면 골판지상자·플라스틱상자·그물망·비닐포대 등으로 포장해야 한다. 또 시장 내 재선별·재포장 등 다듬기도 전면 금지된다. 표준규격 출하 시 포장재비를 일정 비율로 지원받는다. ☎02-500-1824.

◇비닐하우스 재해경감 대책사업= 기존 비닐하우스 중 재해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구조보강사업이 추진된다. 대상은 100㎡ 이상의 시설보강을 원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(농업법인 포함)이며, 철골(유리·경질판) 온실은 제외된다. 지원은 용자 100%, 금리 1.5%, 3년거치 7년 상환

조건. ☎02-500-1866.

◇위생시설 인증을 위한 시설자금 금리인하= 위생시설 인증(HACCP, ISO22000)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금리가 4%에서 농업인·비농업인 구분 없이 2%로 내린다. 자금을 빌리려는 사람은 aT(농수산물유통공사)로 신청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다. ☎02-500-1847.

## 여성 · 가정

### 영농·가사 도우미사업 전국 확대

◇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= 지원대상이 종전 만5세 이하 아동에서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까지 확대된다. 지역도 종전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. ☎02-500-1605.

◇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제도 개선=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육아비용 지원대상이 종전 만5세 이하에서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까지 확대된다. 지원단가도 종전 25%(5세아의 경우 50%)에서 35%(5세아의 경우 50%)로 인상되고, 지원대상 지역이 준농어촌지역까지 확대된다. ☎02-500-1605.

◇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= 사고를 당한 농업인에게 10일간 도우미 임금의 70%(1일 3만 5,000원)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사업과, 농촌 고령가구 등에 세탁·청소 등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지원사업이 올해 전국으로 확대된다. ☎02-500-1607.

◇여성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신설= 올해 전국 9개 도 50개 시·군 지역에서 신규로 시범 실시한다.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이며, 한국어 방문교육 등을 지원한다.

☎02-500-1607<농민신문, 2007. 1. 2>